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264

발의연월일: 2025. 4. 30.

발 의 자: 김교흥·문진석·허종식

강선우 • 이재관 • 장철민

홍기원 • 오세희 • 김한규

강유정ㆍ허성무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재생에너지 연료 의무혼합제도(Renewable Fuel Standard)'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정유사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송용연료에 일정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의무적으로 혼합하도록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정부와 정유사와의 자발적 협약을 통해 경유에 바이오디젤 0.5%를 혼합하도록 하면서 도입하였고, 2015년부터 2.5%로 의무화하여 2018년부터는 3%, 2021년 7월부터는 3.5%로 그 비율을 상향하고, 이후 2024년부터는 3년마다 0.5%씩 상향하여 2030년에는 5%까지 상향하기로 하였음.

의무혼합량 산정 시 2021년까지는 직전연도의 내수판매량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부터는 해당연도 내수판매량을 기준으로 의무혼합량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요의 변동

성으로 인해 해당연도 내수판매량을 정교하게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혼합의무자로서는 의무혼합량을 미달하게 될 시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됨. 더욱이, 글로벌 에너지 위기, 보호무역주의 등 영향으로 해외 바이오디젤 원료를 조달하지 못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혼합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위험이 커지고 있음. 따라서 의무혼합량 부족분을 차기연도로 유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도 의무혼합량의 단계적 상향과 함께 의무이행의 유연성 부여를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하기로 한 바 있음.

이에 의무혼합 이행 시 부족분을 유예하도록 하여 제도를 유연하게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법 시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 신뢰도를 제 고하고자 함(안 제23조의2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혼합의무자는 혼합의무 이행량이 부족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족분을 유예할 수 있다.

제23조의3제1항 중 "그 부족분"을 "그 부족분(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유예한 부족분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3조의2(신·재생에너지 연료 제23조의2(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등) ① (생 략) 혼합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혼합의무자는 혼합의무 이 <신 설> 행량이 부족한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족분 을 유예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3조의3(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23조의3(의무 불이행에 대하 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 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은 혼합의무자가 혼합의무비 관은 혼합의무자가 혼합의무비 율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 율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족분에 해당 연도 따라 그 부족분(제23조의2제2 항에 따라 유예한 부족분은 제 평균거래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 외한다)에 해당 연도 평균거래 을 부과할 수 있다. 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 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